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3월 15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 제안이유

- 저 출산 및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 개정(2006.11.1, 대통령령 제19722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 나.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  
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연가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  
18조제2항)
- 다.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  
도록 함.(안 제22조제5호의2 신설)
- 라.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

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11항 신설)

마.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온라인 원격근무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 앞으로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제18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 조례안 수정이 필요함.
○ 유산·사산의 용어는 다소 거북한데 다른 용어는 없는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됨.
○ 채택근무기간이 규칙에 명시되는가?	○ 중앙부처 등 제도시행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음.
○ 동조례 관련 규칙이 마련되면 위원회에도 설명해 달라.	○ 설명 드리겠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9
의결 연월일	2007. 3. 22

제안년월일 : 2007. 3. 15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휴직사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단서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단서조항중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함.(안 제18조 제2항)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 제2항중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함.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동일함.』



[수정안 포함]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를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47조”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공무원 중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휴직기간”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2항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표 3의 출산란 다음에 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양	본 인	14
----	-----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